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2018.2.28.부터 입법예고(공고번호 제2018-158호) 중에 있으나, 조례안의 조문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 글로벌 확대 추세인 공정무역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나, 사업 추진의 기준이 없음
- ☐ 공정무역 사업의 근거기준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공정무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안 제5조)
- ☐ 사업 추진계획, 지원범위, 사업비의 환수, 신청 및 접수 등(안 제6조 ~ 안 제9조)
- ☐ 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수당(안 제10조 ~ 안 제15조)
- ☐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안 제16조)
- ☐ 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위탁기간 등,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계약의 취소 등, 기능(안 제17조 ~ 안 제21조)
- ☐ 공정무역제품 정보제공,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준용(안 제22조 ~ 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 3396-5592, FAX : 3396-8693, 메일 : pej56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무역"이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단체와 개발도상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민·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
무역단체의 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서를 제출한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0조의 공정무역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정무역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1명
2. 공정무역 업무소관 국장
3. 공정무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
4. 공정무역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소관 주사가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사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할 때

4. 제13조 제③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때

5. 그 밖에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 때
제15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 범위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17조(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무역
센터(이하 “공정무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
례」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공정무역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기능) 공정무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정무역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정무역 사업 실행 지원
3. 공정무역 관련 연구조사·교육·홍보·전파
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공정무역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공정무역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 시설, 체육시설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